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
平成二十九年五月十八日	2017년 5월 18일
財務大臣 麻生 太郎 文部科学大臣 松野 博一 厚生労働大臣 塩崎 恭久 農林水産大臣 山本 有二 経済産業大臣 世耕 弘成 環境大臣 山本 公一	재무장관 麻生太郎 문부과학장관 松野博一 후생노동장관 塩崎恭久 농림수산업장관 山本有二 경제산업장관 世耕弘成 환경장관 山本公一
第1章 総則	제1장 총칙
第1 目的	제1조 목적
この指針は、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により、生物の多様性に関する条約の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名古屋議定書(以下「議定書」という。)の的確かつ円滑な実施を確保し、もって生物の多様性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に貢献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이 지침은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여 생물다양성조약과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정확하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고,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2 定義	제2조 정의
この指針において、次の(1)から(8)まで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1)から(8)まで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1) 遺伝資源 遺伝の機能的な単位を有する植物、動物、微生物その他に由来する素材であって現実の又は潜在的な価値を有するものをいう。	이 지침에서 다음의 (1)에서 (8)까지의 언급하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 (1)에서 (8)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유전자원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갖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소재에서 나온 현실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p>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p> <p>(2) 遺伝資源の 利用 遺伝資源の遺传的又は生化学的な構成に関する研究及び開発を行うことをいう。</p> <p>(3) 遺伝資源に 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 生物の多様性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に関連する伝統的な生活様式 を有する先住民の社会及び地域社会において伝統、風習、文化等に根ざして昔か ら用いられている特有の知識のうち、遺伝資源の利用に関連するものをいう。</p> <p>(4) 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議定書第14条1に規定する情報交換センターをいう。</p> <p>(5) 提供国 議定書の 我が国 以外の 締約国で あって 遺伝資源 又は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を提供する国をいう。</p> <p>(6) 提供国法 令 議定 書第15条 1又は第16条1に 規定する提供国の国内の遺伝資源又は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 統的な知識の取得の機会及び利益の配分に関する法令であっ て、議 定書第14条 2(a)の 規定に より国際 クリアリ ングハ ウスに提供されたものをいう。</p> <p>(7) 許 可証等 議定書 第6条 3(e)の 規定に より発給 された許 可証又はこれに 相当するものをいう。</p> <p>(8) 国際遵守証 明書 議定書第17条2に規定する国際的に認められた遵守の証明書として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に提供された許可証等をいう。</p>	<p>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p> <p>(2) 유전자원의 이용 :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p> <p>(3)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가진 원주민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전통, 풍습, 문화 등에서 기인하고 옛날부터 이용되는 특유의 지식 중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p> <p>(4) 국제클리어링하우스 : 의정서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교환센터를 말한다.</p> <p>(5) 제공국 : 의정서 상의 일본 이외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p> <p>(6) 제공국 법령 : 의정서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국의 국내의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획득 기회와 이익의 배분에 관한 법령이며, 의정서 제14조 제2항 (a)의 규정에 따라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p> <p>(7) 허가증 등 : 의정서 제6조 제3항(e)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허가증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p> <p>(8) 국제준수인증서 : 의정서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준수 인증서로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제공한 허가증 등을 말한다.</p>
<p>第3 適用範圍</p>	<p>제3조 적용범위</p>
<p>1 議定書適用外遺伝資源等</p>	<p>제1항 의정서 적용 외부 유전자원 등</p>
<p>この指針は、次に掲げるものその他の議定書適用外遺伝資源等（議定書の適用される遺伝資源又は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に該当しないものをいう。以下同じ。）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p> <p>(1) 核酸の塩基 配列等の遺伝資源に関する情報（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p>	<p>이 지침은 다음에서 제시하는 것 외의 다른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외부유전자원(의정서의 적용받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련하는 전통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p> <p>(1) 핵산의 염기배열 등의 유전자원에 관한 정보(유전자원에 관련한 전</p>

<p>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 知識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p> <p>(2) 人工合成核酸 (生物から取り出された断片を含まないものに限る。)</p> <p>(3) 遺伝の機能的単位を有しない生化学的化合物</p> <p>(4) ヒトの遺伝資源</p> <p>(5) 遺伝資源又は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であって、議定書が日本国について効力を生ずる日前に提供国から取得されたもの</p> <p>(6) 一般に遺伝資源の利用の目的以外の目的のために販売されている遺伝資源であって、遺伝資源の利用を目的とせずに購入されたもの</p>	<p>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p> <p>통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2) 인공합성핵산(생물로부터 취득하여 나온 절편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p> <p>(3)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가지지 않는 생화학적 화합물</p> <p>(4) 인간의 유전자원</p> <p>(5)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 중, 의정서가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제공국에서 취득한 것</p> <p>(6) 일반적으로 유전자원의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판매되고 있는 유전자원이며,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입된 것</p>
<p>2 議定書適用外遺伝資源利用</p> <p>この指針は、遺伝資源の利用であって食料及び農業のための植物遺伝資源に関する国際条約が適用されるものその他の議定書適用外遺伝資源利用 (議定書の適用される遺伝資源の利用に該当しない行為をいう。) 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p>	<p>제2항 의정서 적용외의 유전자원의 이용</p> <p>이 지침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것 외의 의정서의 적용외의 유전자원의 이용(의정서가 적용되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p>
<p>第2章 提供国法令の遵守の促進に関する措置</p>	<p>제2장 제공국 법령준수 촉진에 관한 조치</p>
<p>第1 遺伝資源の適法な取得に係る報告</p>	<p>제1조 유전자원의 적법한 취득에 관한 신고</p>
<p>1 取得者による報告</p>	<p>제1항 취득자에 의한 신고</p>
<p>提供国法令が適用される遺伝資源 (議定書適用外遺伝資源等を除く。以下同じ。) を取得して我が国に輸入した者 (以下「取得者」という。) は、当該遺伝資源に係る国際遵守証明書が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に掲載された場合には、当該掲載がなされた日から六月以内に、適法に取得したことを証する情報として当該国際遵守証明書の固有の識別記号を記載した様式第1の報告書に当該国際遵守証明書の写し (個人又は法人の権利、競争上の地位その他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情報は除くことができる。 以下同じ。) を添えて環境大臣に報告するものとする。 ただし、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この</p>	<p>제공국 법령이 적용되는 유전자원(의정서 적용을 받지 않는 유전자원 등 제외, 이하 동일)을 취득해서 우리나라에 수입한 자(이하 '취득자'라 한다)는 해당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준수증명서가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게재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해당 국제준수증명서의 고유식별번호를 기재한 양식1의 신고서에 해당하는 국제준수증명서 사본(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권리, 경쟁상의 지위,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동일)을 첨부하여 환경장관에게 신고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p>

<p>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p>	<p>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p>
<p>限りでない。</p> <p>(1) 取得者が、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に国際遵守証明書が掲載される前に、当該国際遵守証明書の固有の識別記号に代わる提供国法令が適用される遺伝資源を適法に取得したことを証する情報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様式第2の報告書に許可証等の写し(個人又は法人の権利、競争上の地位その他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情報は除くことができる。以下同じ。)を添えて環境大臣に報告した場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提供国</li> <li>② 許可証等の発給機関</li> <li>③ 許可証等の発給日</li> <li>④ 許可証等の有効期限</li> <li>⑤ 提供者</li> <li>⑥ 遺伝資源</li> <li>⑦ 提供者と相互に合意する条件の設定の有無</li> <li>⑧ 商業的な利用又は非商業的な利用の別</li> </ol> <p>(2) 許可証等の発給日から一年を経過しても当該許可証等に係る国際遵守証明書が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に掲載されない場合</p>	<p>하지 아니하다.</p> <p>(1) 취득자가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국제준수증명서가 게재되기 전 해당 국제준수증명서의 고유식별번호 대신 제공국 법령이 적용되는 유전자원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양식2 신고서에 허가증(개인 또는 법인의 권리, 경쟁 상의 지위,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동일)을 첨부하여 환경장관에게 신고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공국</li> <li>② 허가증 발급기관</li> <li>③ 허가증 발급일</li> <li>④ 허가증 등의 유효기간</li> <li>⑤ 제공자</li> <li>⑥ 유전자원</li> <li>⑦ 제공자와 상호합의 한다는 조건설정의 유무</li> <li>⑧ 상업적 이용 또는 비상업적 이용의 구별</li> </ol> <p>(2)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도 해당 허가증 등에 관한 국제준수증명서가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게재되지 않는 경우</p>
<p>2 人の健康に係る緊急事態</p>	<p>제2항 사람의 건강에 관한 긴급사태</p>
<p>(1) 1の規定は、国際保健規則で定める緊急事態又は人の健康に対する緊急事態と認められる事態に対処するための遺伝資源の取得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取得者は、緊急事態の収束として認められる条件を満たした日から六月以内に、様式第1の報告書に国際遵守証明書の写しを添えて、環境大臣に報告するものとする。</p> <p>(2) (1)の規定にかかわらず、緊急事態の発生及び収束の時点を特定すること</p>	<p>(1) 제1항의 규정은 국제 보건규칙으로 정하는 긴급사태 또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긴급사태로 인정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유전자원의 취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취득자는 긴급사태의 수습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양식1의 신고서에 국제준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장관에게 신고한다.</p> <p>(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태 발생 및 수습 시점을 특정하기</p>

<p>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p>	<p>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p>
<p>が困難な場合にあつては、当該事態に対処するための遺伝資源を取得した日から一年以内に、様式第1の報告書に国際遵守証明書の写しを添えて環境大臣に報告するものとする。</p>	<p>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유전자원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식 제1의 신고서에 국제준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장관에게 신고한다.</p>
<p>3 輸入者等による報告</p>	<p>제3항 수입자 등에 의한 신고</p>
<p>提供国法令が適用される遺伝資源を他人から譲り受けて国内に輸入した者（取得者を除く。以下「輸入者」という。）又は我が国において当該遺伝資源を譲り受けた者（取得者及び輸入者を除く。）は、当該遺伝資源が適法に取得されたことを証する情報として国際遵守証明書の固有の識別記号を保有し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記号を記載した様式第1の報告書に国際遵守証明書の写しを添えて、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に国際遵守証明書が掲載される前に固有の識別記号に代わる適法に取得したことを証する情報を保有する場合にあつては様式第2の報告書に許可証等の写しを添えて、これを環境大臣に報告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p>	<p>제공국 법령이 적용되는 유전자원을 타인으로부터 넘겨받아 국내에 수입한 자(취득자를 제외한다. 이하 ‘수입자’라 한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유전자원을 양수한 자(취득자 및 수입자를 제외한다)는 해당 유전자원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국제준수증명서의 고유식별번호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기호를 기재한 양식1의 신고서에 국제준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국제준수증명서가 게재되기 전에 고유식별번호 대신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식2 신고서에 허가증을 더하여, 이를 환경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4 環境大臣による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への情報の提供</p>	<p>제4항 환경장관에 의한 국제클리어링하우스의 정보의 제공</p>
<p>(1) 環境大臣は、1 から3 までのいずれかの規定に基づき様式第1により報告された情報を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に提供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報告をした者に係る情報を提供するかは、当該者の希望に応じて決定するものとする。</p>	<p>(1) 환경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기초하여 양식1에 의하여 신고된 정보를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제공한다. 이 경우 신고한 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지는 해당자의 희망에 의하여 결정한다.</p>
<p>(2) 環境大臣は、1 又は3 の規定に基づき様式第2により報告した者の希望に応じて、当該報告された情報を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に提供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提供する情報は、当該者の希望に応じて決定するものとする。</p>	<p>(2) 환경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기초하여 양식2에 의해 신고한 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신고된 정보를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제공한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자의 희망에 의하여 결정한다.</p>
<p>5 環境大臣による情報の周知</p>	<p>제5항 환경장관에 의한 정보의 주지</p>
<p>(1) 環境大臣は、1 から3 までのいずれかの規定に基づき報告した者の希望に応じて、当該報告された情報を環境省のウェブサイトに掲載するものとする。</p>	<p>(1) 환경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한 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신고된 정보를 환경부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이 경우 게재하는</p>

<p>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p> <p>この場合において、掲載する情報は、当該者の希望に応じて決定するものとする。</p> <p>(2) 環境大臣は、(1)に定める情報のほか、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措置を的確かつ円滑に行うために必要な情報を環境省のウェブサイトに掲載するものとする。</p>	<p>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p> <p>정보는 해당자의 희망에 의하여 결정한다.</p> <p>(2) 환경장관은 (1)에서 정하는 정보 외에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조치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 웹사이트에 게재한다.</p>
<p>第2 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の適法な取得に係る報告</p>	<p>제2조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의 적법한 취득에 관한 신고</p>
<p>第1の1から3までのいずれかの規定に基づく報告をする者のうち、当該報告の対象となる遺伝資源の利用において併せて利用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提供国法令が適用される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を取得して我が国に持ち込んだ者は、当該報告に当たって、様式第1又は様式第2の報告書に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を適法に取得した旨を記載し、併せて報告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1の1(2)の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p>	<p>제1조의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근거한 신고를 하는 자 중 해당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함께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국 법령이 적용하는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을 습득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는 해당신고에 있어서 양식 1의 신고서 또는 양식2 신고서에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적인 지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을 기재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 제1항(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3 報告の奨励</p>	<p>제3조 신고의 장려</p>
<p>1 報告に係る指導及び助言</p>	<p>제1항 신고에 관한 지도 및 조언</p>
<p>(1) 環境大臣は、第1の1又は2に定める期間内に報告をしなかった者に対し、それぞれ第1の1又は2に定める報告を求めるものとする。また、環境大臣その他の主務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取得者に対し、当該報告に関し必要な指導及び助言を行うものとする。</p> <p>(2) 環境大臣は、第2に定める持ち込んだ者であって第1の1又は2に定める期間内に報告をしなかった者に対し、第2に定める報告を求めるものとする。また、環境大臣その他の主務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持ち込んだ者に対し、当該報告に関し必要な指導及び助言を行うものとする。</p>	<p>(1) 환경장관은 제1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각각 제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신고를 요구한다. 또한 환경장관 대신 다른 주무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득자에 대하여 신고에 관한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해야 한다.</p> <p>(2) 환경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들어온 자로서 제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제2조에서 정하는 신고를 요구한다. 또한 환경장관 대신 다른 주무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득자에 대하여 신고에 관한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한다.</p>
<p>2 國際遵守證明書の固有の識別記号の公表</p>	<p>제2항 국제준수증명서의 고유식별번호의 공표</p>
<p>環境大臣は、取得者に係る情報が含まれない國際遵守証明書については、当該國際遵守證明書の固有の識別記号を公表し、報告を奨励するものとする。</p>	<p>환경장관은 취득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국제준수증명서에 대하여는 해당 국제준수증명서의 고유식별번호를 공표하고 신고를 장려한다.</p>

<p>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p>	<p>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p>
<p>第4 提供国法令の違反の申立てに係る協力</p>	<p>제4조 제공국 법령 위반의 신청에 관한 협력</p>
<p>1 議定書の我が国以外の締約国から提供国法令の違反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環境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議定書により締約国が協力の義務を負うものとして定められた範囲内において、当該申立てのあった事案に係る取得者、輸入者、遺伝資源又は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を利用する者その他の遺伝資源又は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を取り扱う者に対し、その有する遺伝資源又は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の取得、輸入、利用その他の取扱いに関する提供国法令の違反についての情報の提供を求めるものとする。また、環境大臣その他の主務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遺伝資源又は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を取り扱う者に対し、その有する遺伝資源又は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の取得に関する情報の提供に関し必要な指導及び助言を行うものとする。</p>	<p>제1항 의정서의 우리나라 이외의 체약국에서 법령위반의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환경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이 협조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당 신청한 사안에 관계된 취득자, 수입자,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련한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자, 기타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을 취급하는 자에게 그 해당하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의 취득, 수입, 이용 및 기타의 취급에 관한 제공국 법령위반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한다. 또한 환경장관 및 다른 주무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을 취급하는 자에게 그가 가지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의 취득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해야 한다.</p>
<p>2 環境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1により得られた情報を、議定書第13条1に基づき指定した中央連絡先等を通じ、申立てをした議定書の我が国以外の締約国に提供するものとする。</p>	<p>제2항 환경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항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의정서 제13조 제1항에 기초하여 지정한 중앙연락처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한 의정서의 국내 이외의 당사국에 제공해야 한다.</p>
<p>第5 遺伝資源利用関連情報の提供の求め等</p>	<p>제5조 유전자원 이용관련 정보제공의 요구 등</p>
<p>1 遺伝資源利用関連情報の提供の求め</p>	<p>제1항 유전자원 이용관련 정보제공의 요구</p>
<p>(1) 環境大臣は、議定書第17条1(a)に規定する確認のための機関とし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1の1に基づく報告において自ら遺伝資源を利用する旨を報告した者に対し、当該報告を受けた日から起算しておおむね五年を経過した後に、様式第3による遺伝資源の利用に関連する情報(以下「遺伝資源利用関連情報」という。)の提供を求めるものとする。</p> <p>(2) 環境大臣は、(1)の求めにもかかわらず遺伝資源利用関連情報を提供しなかった者に対し、その提供を再度求めるものとする。また、環境大臣その他の</p>	<p>(1) 환경장관은 의정서 제17조 제1항 (a)에서 규정하는 확인을 위한 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조 제1항에 근거한 신고에서 스스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고, 대체로 5년을 경과한 후에, 양식 제3의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련된 정보(이하 ‘유전자원 이용관련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p> <p>(2) 환경장관은 (1)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원이용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그 제공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 또한 환경장관 외의 다른</p>

<p>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p> <p>主務大臣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遺伝資源利用関連情報を提供しなかった者に対し、当該提供に関し必要な指導及び助言を行うものとする。</p> <p>(3) (1)の遺伝資源利用関連情報の提供を求められたか否かにかかわらず、遺伝資源を利用する者であって提供 国法令を遵守して取得された遺伝資源の利用について周知を希望する者は、環境 大臣に、様式第1 又は様式第2 及び様式第3 による報告書により、遺伝資源を適 法に取得したことを証する情報及び遺伝資源利用関連情報を報告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p>	<p>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p> <p>주무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유전자원이용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제공에 관한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해야 한다.</p> <p>(3) (1)의 유전자원이용관련정보의 제공이 요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 법령을 준수하고 취득된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해서 주지를 희망하는 사람은 환경장관에게 양식1 또는 양식2, 양식3의 신고서에 의한 유전자원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정보 및 유전자원이용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p>
<p>2 遺伝資源利用関連情報の活用</p> <p>環境大臣は、1に基づき提供された遺伝資源利用関連情報を、当該提供をした者の希望に応じて、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に提供するとともに、環境省のウェブサイトに掲載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提供又は掲載する情報は、当該者の希望に応じて決定するものとする。また、環境大臣その他の主務大臣は、当該情報を通じて把握した遺伝資源の利用実態に即し、提供国法令の遵守に係る啓発を重点的かつ効率的に行うものとする。</p>	<p>제2항 유전자원 이용관련 정보의 활용</p> <p>환경장관은 제2항에 근거하여 제공된 유전자원 이용관련 정보를 해당 제공한 사람이 원하는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부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이 경우, 제공 또는 게재한 정보는 해당자의 희망에 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환경장관 기타 주무 장관은 해당 정보를 통해서 파악한 유전자원의 이용실태에 입각하여 제공국 법령준수에 관한 계발을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p>
<p>第3章 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奨励</p>	<p>제3장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장려</p>
<p>第1 公正かつ衡平な利益配分</p>	<p>제1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배분</p>
<p>1 我が国に存する遺伝資源を利用のために提供する者は、当該利用から生ずる利益について配分を求める場合には、当該配分が公正かつ衡平なものとなるよう当該提供に係る契約を締結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p>	<p>제1항 우리나라에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는 해당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해서 배분을 요구할 경우, 해당 배분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되도록 해당 제공에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2 我が国に存する遺伝資源を利用する者は、当該利用から生ずる利益について配分を求められる場合には、当該配分が公正かつ衡平なものとなるよう当該利用のための取得に係る契約を締結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p>	<p>제2항 우리나라에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해서 배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분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되도록 해당 이용을 위한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3 提供国法令がその取得に当たって適用された遺伝資源又は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を利用する者は、当該利用から生ずる利益について配分を求め</p>	<p>제3항 제공국 법령에 따라 그 취득에 있어서 적용된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배분을</p>

<p>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p>	<p>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p>
<p>られる場合には、当該配分が公正かつ衡平なものとなるよう当該利用のための取得に係る契約を締結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p>	<p>요구받는 경우 해당 배분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되도록 해당 이용을 위한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第2 遺伝資源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生物の多様性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への充当</p>	<p>제2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의 충당</p>
<p>我が国に存する遺伝資源を利用のために提供する者、我が国に存する遺伝資源を利用する者及び提供国法令がその取得に当たって適用された遺伝資源を利用する者は、当該利用から生ずる利益を生物の多様性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に充て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p>	<p>우리나라에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자, 우리나라에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와 제공국 법령에 따라 보유하고 적용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이용에서 발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요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第3 締結する契約における規定を通じた当該契約の実施に関する情報共</p>	<p>제3조 체결하는 계약의 규정을 통한 해당 계약의 실시에 관한 정보공유</p>
<p>我が国に存する遺伝資源を利用のために提供する者、我が国に存する遺伝資源を利用する者及び提供国法令がその取得に当たって適用された遺伝資源を利用する者は、締結する契約において設定する相互に合意する条件に、諸条件の実施に関する報告の義務その他の情報の共有のための規定を含め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p>	<p>우리나라에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자, 우리나라에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와 제공국 법령에 따라 보유하고 적용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체결하는 계약에서 설정하는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조건의 실시에 관한 신고의무 및 기타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第4 契約の条項のひな形の作成等</p>	<p>제4조 계약 조항의 모형의 작성 등</p>
<p>遺伝資源の利用に関連する業界等の団体は、その業界等の実態に応じて、遺伝資源の利用のための取得に係る契約に関する分野別の及び分野横断的な契約の条項のひな形の作成及び更新を行うよう努めるとともに、これらが利用され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p>	<p>유전자원의 이용에 관련하는 업계 등의 단체는, 그 업계 등의 실태에 따르되,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한 취득에 관한 계약에 관한 분야별 또는 분야횡단적 계약조항의 모형의 작성 및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들이 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第5 行動規範、指針及び最良の実例又は基準</p>	<p>제5조 행동규범, 지침 및 최선의 예시 또는 기준</p>
<p>遺伝資源の利用に関連する業界等の団体は、その業界等の実態に応じて、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利益の配分に関する任意の行動規範、指針及び最良の実例又は基準の作成及び更新を行うよう努めるとともに、これらが利用され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p>	<p>유전자원의 이용에 관련하는 업계 또는 단체는 그 업계 등의 실태에 따르되,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이익배분에 관한 임의의 행동규범, 최선의 예시 또는 기준을 작성하고 갱신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이 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第4章 我が国に存する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の提供</p>	<p>제4장 국내에 있는 유전자원 취득 기회의 제공</p>

<p>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p>	<p>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p>
<p>議定書第6条1ただし書に基づく別段の決定として、我が国に存する遺伝資源の利用のための取得の機会の提供に当たり、同条1に規定する情報に基づく事前の我が国の同意は必要としないものとする。</p>	<p>의정서 제6조 제1항의 단서에 근거한 특별한 결정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한 취득 기회의 제공에 해당하는 동 조 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전의 국내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p>
<p>第5章 国内における遺伝資源の取得に関する書類の発給</p>	<p>제5장 국내에서의 유전자원의 취득에 관한 서류 발급</p>
<p>主務大臣は、我が国に存する遺伝資源について取得の機会の提供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が的確かつ円滑に実施されるよう、独立行政法人その他の機関であって主務大臣が適当と認めるものが、遺伝資源が国内において取得されたことを示す書類を発給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機関に対する技術的な助言又は情報の提供、関係省庁との連絡調整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p>	<p>주무장관은 국내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에 대해서 취득의 기회제공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독립행정법인 및 기타 기관으로서 주무 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유전자원이 국내에서 취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 또는 정보제공, 관계부처와 연락 조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第6章 主務大臣</p>	<p>제6장 주무장관</p>
<p>第2章第3の1(1)及び(2)、第4の1並びに第5の1(2)及び2並びに前章における主務大臣は、財務大臣、文部科学大臣、厚生労働大臣、農林水産大臣、経済産業大臣又は環境大臣とする。</p>	<p>제2장 제3조의 1항 (1) 또는 (2),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1) 또는 2 및 제2항과 전 장에서의 주무 장관은 재무 장관, 문부과학장관, 후생노동장관, 농림수산업장관, 경제산업장관 또는 환경장관으로 한다.</p>
<p>附 則</p>	<p>부칙</p>
<p>(施行期日)</p>	<p>(시행기일)</p>
<p>1 この告示は、議定書が日本国について効力を生ずる日から施行する。</p>	<p>1 이 고시는 의정서가 일본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見直し)</p>	<p>(재검토)</p>
<p>2 この告示は、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利益の配分に関する社会的情勢の変化等を勘案し、必要に応じ見直しを行うものとする。</p>	<p>2 이 고시는 유전자원 취득의 기회 및 이익배분에 관한 사회적 정세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개선한다.</p>
<p>(我が国に存する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の提供に係る措置の再検討)</p>	<p>(국내에 있는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의 제공과 관련된 조치의 재검토)</p>
<p>3 議定書第6条1に基づく我が国に存する遺伝資源の利用のための取得の機会の提供に係る法令の整備の要否については、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利益配分に関する社会的情勢の変化等を勘案し、この告示の施行の日から起算して五年以内に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p>	<p>3 의정서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국내에 있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한 취득 기회의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정비의 필요와 불필요에 대해서는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이익배분에 관한 사회적 정세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내에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결과</p>



<p>                     遺傳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                 </p> <p>                     a) <input type="checkbox"/> 報告者自らが遺傳資源を利用                      b) <input type="checkbox"/> 報告者から譲り受けた別の者が遺傳資源を利用                      c) <input type="checkbox"/> その他 ( )                 </p> <p>                     3. 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への提供等を希望しない情報                      (1) 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  <input type="checkbox"/> 報告者に係る情報                      (2) 環境省のウェブサイト                      ( )                 </p> <p>                     4. 報告の区分                      a) <input type="checkbox"/> 第2章第1の1に基づく報告(取得者による報告)                      b) <input type="checkbox"/> 第2章第1の2(1)に基づく報告(人の健康に係る緊急事態の収束後の報告)                      c) <input type="checkbox"/> 第2章第1の2(2)に基づく報告(人の健康に係る緊急事態の発生及び収束の時点を特定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の報告)                      d) <input type="checkbox"/> 第2章第1の3に基づく報告(輸入者等による任意の報告)                      e) <input type="checkbox"/> 第2章第5の1(3)に基づく報告(遺傳資源を利用する者による任意の報告)                 </p> <p>                     備考                      1 報告者が法人の場合にあっては、「報告者の氏名」については、法人の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を記載し、「報告者の住所」について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を記載すること。                 </p>	<p>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                 </p> <p>                     a) <input type="checkbox"/> 신고자 스스로가 유전자원을 이용                      b) <input type="checkbox"/> 신고자에게서 물려받은 다른 사람이 유전자원을 이용                      c) <input type="checkbox"/> 기타 ( )                 </p> <p>                     3. 국제클리어링하우스의 제공 등을 희망하지 않는 정보                      (1) 국제클리어링하우스  <input type="checkbox"/> 신고자에 관한 정보                      (2) 환경부 웹 사이트                      ( )                 </p> <p>                     4. 신고의 구분                      a) <input type="checkbox"/> 제2장 제1조 제1항에 근거한 신고(취득자에 의한 신고)                      b) <input type="checkbox"/> 제2장 제1조 제2항(1)에 근거한 신고(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긴급사태 수습 후 보고)                      c) <input type="checkbox"/> 제2장 제1조 제2항(2)에 근거한 신고(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긴급사태 발생 및 수습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신고)                      d) <input type="checkbox"/> 제2장 제1조 제3항에 근거한 신고(수입자 등에 의한 임의의 신고)                      e) <input type="checkbox"/> 제2장 제5항 제1조(3)에 근거한 신고(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에 의한 임의의 신고)                 </p> <p>                     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자 이름]에 대해서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소]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록한다.                 </p>
---	---

<p>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關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p>	<p>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p>
<p>2 報告者の氏名又は法人の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については、英語による表記を併記すること。</p> <p>3 氏名（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を記載し、押印することに代えて、本人（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が署名することができる。</p> <p>4 1. (2) の「当該遺伝資源の利用に併せて利用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当該遺伝資源に關連する伝統的な知識を取得して我が国に持ち込んだ場合」については、該当するものにチェックすること。</p> <p>5 2. の「遺伝資源の利用（研究及び開発）に係る事項」については、該当するものにチェックすること（複数回答可）。今後の予定の情報の記載も可とする。</p> <p>6 3. の「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への提供等を希望しない情報」については、遺伝資源の取得に係る情報のうち報告者に係る情報について、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への提供を希望しない場合は、チェックをすること。また、遺伝資源の取得に係る情報のうち環境省のウェブサイトへの掲載を希望しないものがある場合は、希望しない情報を具体的に記載すること。</p> <p>7 4. の「報告の区分」については、該当するものにチェックすること。</p> <p>8 国際遵守證明書の写しを添付すること。ただし、当該個人又は法人の権利、競争上の地位その他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情報は除くことができる。</p> <p>9 用紙の大きさは、日本工業規格 A 4 とすること。</p>	<p>2. 신고자의 이름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영어에 의한 표기를 병기한다.</p> <p>3.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함에 대신하여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서명할 수 있다.</p> <p>4. 기재사항 1-(2)는 [해당 유전자원의 이용과 함께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유전자원에 관련하는 전통지식을 취득하여 국내에 들여올 경우]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한다.</p> <p>5. 기재사항 2는 [유전자원의 이용(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것에 체크한다(복수응답). 향후의 예정에 대하여도 기재한다.</p> <p>6. 기재사항 3은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대하여 제공을 희망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유전자원의 취득에 관한 정보 중 신고자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제공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체크한다. 또한 유전자원의 취득에 관한 정보 중 환경부 웹사이트에 게재를 희망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 원하지 않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p> <p>7. 기재사항 4의 [신고의 구분]은 해당하는 것에 체크한다.</p> <p>8. 국제준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단,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및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p> <p>9. 용지의 크기는 일본공업규격인 A4로 한다.</p>
<p>様式第2 (第2章第1の1 (1) 若しくは3及び第2又は第5の1 (3) 關係)</p>	<p>양식 2 (제2장 제1조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2조, 제5조 제1항 (3) 관련)</p>
<p>遺伝資源の取得に係る許可証等に基づく報告書</p> <p style="text-align: right;">平成 年 月 日 環境大臣 殿</p>	<p>유전자원 취득에 관한 허가증 등에 기초한 신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환경장관 귀하</p>

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

住 所  
 報告者 氏 名                      印  
 電話番号

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第2章第1の1（1）若しくは3及び第2又は第5の1（3）の規定により、遺伝資源の取得について報告します。

1. 遺伝資源の適法な取得に係る事項

（1）国際遵守証明書固有の識別記号に代わり、適法に取得したことを証する情報

- ① 提供国
- ② 許可証等の発給機関
- ③ 許可証等の発給日
- ④ 許可証等の有効期限
- ⑤ 提供者
- ⑥ 遺伝資源
- ⑦ 提供者と相互に合意する条件の設定の有無
- ⑧ 商業的又は非商業的な利用の別

（2）当該遺伝資源の利用に併せて利用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当該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を取得して我が国に持ち込んだ場合

- 先住民の社会又は地域社会の情報に基づく事前の同意又は当該社会の承認及び関与によって当該知識を取得した。
- 先住民の社会又は地域社会と相互に合意する条件を設定し、当該知識を取得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

주소  
 신고자 성명                                      (인)  
 연락처

유전자원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 제2장 제1조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2조, 제5조 제1항 (3)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원의 취득을 신고합니다.

1. 유전자원의 적법한 취득에 관한 사항

（1）국제준수증서상의 고유식별번호 대신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① 제공국	
② 허가증 발급기관	
③ 허가증 발급일	
④ 허가증 유효기간	
⑤ 제공자	
⑥ 유전자원	
⑦ 제공자와 상호합의한 조건 설정의 유무	
⑧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의 구별	

（2）해당 유전자원의 이용과 함께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유전자원에 관련하는 전통지식을 취득하여 국내에 들여올 경우

- 원주민 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전동의 및 해당 사회의 승인 및 관여로 해당 지식을 습득

<p>                 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                  した。             </p> <p>                 2. 遺伝資源の利用（研究及び開発）に係る事項                  a) <input type="checkbox"/> 報告者自らが遺伝資源を利用                  b) <input type="checkbox"/> 報告者から譲り受けた別の者が遺伝資源を利用                  c) <input type="checkbox"/> その他（ ）             </p> <p>                 3. 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への提供等を希望しない情報                  (1) 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                  ( )                  (2) 環境省のウェブサイト                  ( )             </p> <p>                 4. 報告の区分                  a) <input type="checkbox"/> 第2章第1の1（1）に基づく報告（取得者による報告）                  b) <input type="checkbox"/> 第2章第1の3に基づく報告（輸入者等による任意の報告）                  c) <input type="checkbox"/> 第2章第5の1（3）に基づく報告（遺伝資源を利用する者による任意の報告）             </p> <p>                 備考                  1 報告者が法人の場合にあつては、「報告者の氏名」については、法人の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を記載し、「報告者の住所」について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を記載すること。             </p>	<p>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  <input type="checkbox"/> 원주민 사회 또는 지역사회와 상호합의조건을 설정하고 해당 지식을 습득             </p> <p>                 2. 유전자원의 이용(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사항                  a) <input type="checkbox"/> 신고자 스스로가 유전자원을 이용                  b) <input type="checkbox"/> 신고자에게서 물려받은 다른 사람이 유전자원을 이용                  c) <input type="checkbox"/> 기타 ( )             </p> <p>                 3.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대해 제공 등을 희망하지 않는 정보                  (1) 국제클리어링 하우스                  ( )                  (2) 환경부 웹 사이트                  ( )             </p> <p>                 4. 신고의 구분                  a) <input type="checkbox"/> 제2장 제1조 제1항 (1)에 근거한 신고(취득자에 의한 신고)                  b) <input type="checkbox"/> 제2장 제1조 제3항에 근거한 신고(수입자 등에 의한 임의의 신고)                  c) <input type="checkbox"/> 제2장 제5조 제1항 (3)에 근거한 신고(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에 의한 임의의 신고)             </p> <p>                 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자 이름]에 대해서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소]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록한다.             </p>
--	--

<p>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p>	<p>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p>
<p>2 報告者の氏名又は法人の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については、英語による表記を併記すること。</p> <p>3 氏名（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を記載し、押印することに代えて、本人（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が署名することができる。</p> <p>4 1. (1)의 ⑥의 「遺伝資源」については、遺伝資源の学名が明らかな場合には、学名を記載すること。また、②の「許可証等の発給機関」及び⑤の「提供者」については、英語による表記を併記すること。</p> <p>5 1. (2)의 「当該遺伝資源の利用に併せて利用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当該遺伝資源に関連する伝統的な知識を取得している場合」については、該当するものにチェックをすること。</p> <p>6 2. 의 「遺伝資源の利用（研究及び開発）に係る事項」については、該当するものにチェックをすること（複数回答可）。今後の予定の情報の記載も可とする。</p> <p>7 3. 의 「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への提供等を希望しない情報」については、遺伝資源の取得に係る情報のうち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への提供又は環境省のウェブサイトへの掲載を希望しないものがある場合は、希望しない情報をそれぞれ具体的に記載すること。</p> <p>8 4. 의 「報告の区分」については、該当するものにチェックすること。</p> <p>9 許可証等の写しを添付すること。ただし、当該個人又は法人の権利、競争上の地位その他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情報は除くことができる。</p> <p>10 用紙の大きさは、日本工業規格A4とすること。</p>	<p>2. 신고자의 이름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영어에 의한 표기를 병기한다.</p> <p>3.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함에 대신하여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서명할 수 있다.</p> <p>4. 기재사항 1-(1)의 ⑥의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유전자원의 학명이 분명한 경우에는 학명을 기재한다. 또한 ②의 [허가증 발급기관] 및 ⑤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영어에 의한 표기를 병기한다.</p> <p>5. 기재사항 1-(2)는 [해당 유전자원의 이용과 함께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유전자원에 관련하는 전통지식을 취득하여 국내에 들여올 경우]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한다.</p> <p>6. 기재사항 2는 [유전자원의 이용(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것에 체크한다(복수응답). 향후의 예정에 대하여도 기재한다.</p> <p>7. 기재사항 3은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대하여 제공을 희망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유전자원의 취득에 관한 정보 중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p> <p>8. 기재사항 4의 [신고의 구분]은 해당하는 것에 체크한다.</p> <p>9. 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되, 단,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및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p> <p>10. 용지의 크기는 일본공업규격인 A4로 한다.</p>
<p>様式第3（第2章第5の1（1）又は（3）関係）</p>	<p>양식 3 (제2장 제5조 제1항 (1) 또는 (3) 관련)</p>
<p>遺伝資源の利用に関連する情報に係る報告書</p> <p style="text-align: right;">平成 年 月 日</p>	<p>유전자원의 이용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신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遺傳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
f) <input type="checkbox"/> 非商業的な目的の研究 g) <input type="checkbox"/> その他 ( )	e) <input type="checkbox"/> 기타의 제품이나 품종개발 (분야 : ) f) <input type="checkbox"/>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 g) <input type="checkbox"/> 기타 ( )
4. 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への提供等を希望しない情報	4.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대해 제공 등을 희망하지 않는 정보
(1) 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 ( )	(1) 국제클리어링 하우스 ( )
(2) 環境省のウェブサイト ( )	(2) 환경부 웹 사이트 ( )
5. 報告の区分	5. 신고의 구분
a) <input type="checkbox"/> 第2章第5の1 (1) に基づく報告 (取得者による報告) b) <input type="checkbox"/> 第2章第5の1 (3) に基づく報告 (遺傳資源を利用する者による任意の報告)	a) <input type="checkbox"/> 제2장 제5조 제1항 (1)에 근거한 신고(취득자에 의한 신고) b) <input type="checkbox"/> 제2장 제5조 제1항 (3)에 근거한 신고(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에 의한 임의의 신고)
備考	비고
1 報告者が法人の場合にあっては、「報告者の氏名」については、法人の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を記載し、「報告者の住所」について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を記載すること。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자 이름]에 대해서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소]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록한다.
2 報告者の氏名又は法人の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については、英語による表記を併記すること。	2. 신고자의 이름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영어에 의한 표기를 병기한다.
3 氏名 (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を記載し、押印することに代えて、本人 (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 が署名することができる。	3.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함에 대신하여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서명할 수 있다.
4 1. の「報告に係る遺傳資源」については、当該報告対象となる遺傳資源に	

<p>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を次のように定める。</p> <p>ついて、その学名が明らかな場合には、学名を記載すること。様式第1により報告した場合は、国際遵守証明書の固有の識別記号の記載も可とする。</p> <p>5 2. の「遺伝資源の利用の状況」とは、研究、開発、イノベーション、商業化前、商業化等のいずれかの段階にあること又はあったことをいい、a)、b)又はc)のうち該当するいずれかのものにチェックすること。c)の場合は、その具体的な状況を記載すること。なお、遺伝資源を廃棄したため利用していない場合にはその旨を記載すること。</p> <p>6 3. の「遺伝資源の利用の分野」については、2. でa)又はb)と回答した場合、該当するものにチェックすること(複数回答可)。</p> <p>7 4. の「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への提供等を希望しない情報」については、遺伝資源の利用に係る情報のうち国際クリアリングハウスへの提供又は環境省のウェブサイトへの掲載を希望しないものがある場合は、希望しない情報をそれぞれ具体的に記載すること。</p> <p>8 5. の「報告の区分」については、該当するものにチェックすること。</p> <p>9 用紙の大きさは、日本工業規格A4とすること。</p>	<p>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p> <p>4. 기재사항 1의 [신고에 의한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에 대하여, 그 학명이 분명한 경우에는 학명을 기재한다. 양식 1에 의한 보고에 따른 국제준수증명서의 고유식별번호도 기재한다.</p> <p>5. 기재사항 2의 [유전자원 이용상황]은 연구개발, 이노베이션, 상업화 전 또는 상업화 등의 단계에 있는 것 또는 있었던 것을 말하며, a)~c) 중 해당하는 것에 체크한다. c)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하며, 또한 유전자원을 폐기하여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p> <p>6. 기재사항 3의 [유전자원 이용분야]에 대해서는 기재사항 2의 a) 또는 b)라고 응답할 경우 해당하는 것에 체크한다(복수응답 가능)</p> <p>7. 기재사항 4는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대하여 제공을 희망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유전자원의 취득에 관한 정보 중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p> <p>8. 기재사항 5의 [신고의 구분]은 해당하는 것에 체크한다.</p> <p>9. 용지의 크기는 일본공업규격인 A4로 한다.</p>
---	---